



## 교육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국가 등 안내

1.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9284('21.3.11.)
2.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중대본 3.11.)에 따라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에게 단계적으로 격리면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대상 및 적용 시점**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3.21.(월) ~**
      - \*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4.1.(금) ~**
      - \*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한 자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방식**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상 관련 정보 자동 연계
    -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Q-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 활용하여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셀드, 코백신, 코보백스
  -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 예외 대상(3.21.부터 적용)**
    - 국가별 위험도 분석 등에 따른 관계부처 상황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격리를 유지
3. 아울러 4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입국 단계에서의 연락처·주소 유선확인 절차와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를 중단하니 원활한 시행을 위한 안내와 조치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교육부장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소속기관, 소속단체, 시도교육청

주무관

강진아

행정사무관

김은미

학생건강정책  
과장

전결 2022.3.14.

정희권

협조자

시행 학생건강정책과-2177 ((2022.3.14.)) 접수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 (어진 / [www.moe.go.kr](http://www.moe.go.kr)  
동)

전화 044-203-6962 전송 044-203-6438 / [jinariver@korea.kr](mailto:jinariver@korea.kr) / 공개